

제34조(신분보장)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35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.

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.

제36조(당연퇴직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.

1. 제1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
2. 사망한 경우
3. 자격증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자격이 취소(상실)된 때

제37조(의원면직)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의원면직 제한)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
2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
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(이하 "조사 및 수사기관"이라 한다)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

제39조(비위면직자 취업제한) ① 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,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(이하 "영리사기업체"라 한다)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.

②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40조(직권면직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
2. 직제개편과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